



“국민과 함께하는 한돈산업”



# 대한한돈협회

우137-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1-19 제2축산회관 3층 / ☎(02)581-9751/ Fax581-9769 환경방역팀

문서번호 한돈협지 제350-9호  
 시행일자 2024. 2. 22.  
 수신 전국 도협의회 및 지부(회)  
 참조

선결			지시	
접수	일자		결재공람	
	시간 번호			
	처리과			
	담당자			

## 제 목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사업 회원농가 참여 의향조사

1. 관련 :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-1293 (2024. 2. 20)

2. 최근 고병원성 PRRS·PED가 발생 및 확산되고 있어 돼지 폐사 및 농장 생산성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 '05년부터 실시한 농식품부 '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' 사업을 아래와 같이 '24년부터 PED 및 PRRS 모니터링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, 각 도협의회 및 지부(회)에서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요청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사업명 :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사업

나. 수요조사 기간 : **2월 22일(목) ~ 2월 27일(화)**

※ 지부(회)에서 불임 양식 도협의회 전달 → 도협의회 취합 후 불임 양식 중앙회 전달

다. 사업량 변경 주요 내용

	기 존	개 정(안)
지원대상	286농가	858농가
지원기준	양돈농가 개소당 10백만원 (국비 3백만원, 지방비 3백만원, 자부담 4백만원)	양돈농가 개소당 3.33백만원 (국비 1백만원, 지방비 1백만원, 자부담 133만원)
컨설팅 횟수	12회	4회

\* 컨설팅 횟수 줄이고 농가수를 늘려 모니터링 확대

라. 제3종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현황 개선 강화

- 정확한 발생 현황 및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이동제한 예외조건 홍보
  - 가축전염병 제28조의2(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)
  - 가축방역관 세척·소독 확인 후 계약사육농가 및 도축장 출하 가능

< 가축전염병 제28조의2(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) >

\*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(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)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
다만,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·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.

- 가축재해보험 보상금 지급 전염병\* 추가(PRRS) 협의(재해보험정책과)
  - \*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별약관에 의해 현재 TGE, PED, ROTA 3종 지급
- 돼지유행성설사병 진단농가 백신지원사업 백신(G2b) 우선지급

※ 붙임 :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사업 회원농가 참여 의향 조사 1부  
(홈페이지 지부알림 게시판). 끝.

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

